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4
----------	-----

2023. 3. 24.(금)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 유상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상용 의원)

###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보건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보건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 가. 조례 제정이유

- 교육부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 19 유행 전후 청소년 건강행태 변화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비만, 스트레스 인지·우울·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아침식사 결식이나 불규칙한 식사, 과일채소 섭취는 주는 반면 인스턴트 음식섭취는 증가하는 등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음주와 흡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새로운 감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증진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교육부도 2021년 9월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2조3 등에 따라 2023년 2월 14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학교 보건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개정 내용(2022.3.24. 시행) >**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도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sup>26)</sup>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을 연간 17차시 이상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2022학년도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학 교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실시 학교 수
			보건과목 선택학교 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초	256	211	0	1.7	1.7	1.8	2.2	11.4	8.2	4.6	256
중	128	93	10	5.8	5.4	4.2				5.2	128
고	82	81	27	4.6	5.9	5.4				5.3	78
특수	10	10	4	10.8	3.8	2.5	2.9	8.7	8.3	4.8	10
계	476	395	41								472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운영(2021~2022학년도)>

연수과정	대상	기간	방법	이수인원	시간	비고
2021. 신규보건교사 및 보건업무담당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신규·저경력보건교사 및 보건업무담당교사	2021.5.3. ~12.6.	원격연수 (컨텐츠 제공형)	153	4	연중 운영
보건교사를 위한 수업 코칭의 이해와 수업자료 개발	보건교사	2021.12.7. ~10.	대면	45명	4	3기 운영
2022. 학교보건업무 역량 강화 연수	(초등) 신규 및 저경력 보건교사	2022.5.10.	비대면	119명	2	3기 운영
	(중등) 신규 및 저경력 보건교사	2022.5.12.	비대면	105명	2	3기 운영
	보건업무담당교사	2022.5.13.	비대면	18명	2	3기 운영
2022. 예술과 치유를 담은 보건교육 역량강화 연수 I	보건교사 및 보건교육 담당교사	2022.12. 16.~21.	대면	58명	4	3기 운영
2022. 예술과 치유를 담은 보건교육 역량강화 연수 I	보건(교육담당)교사	2022.12. 20.~23.	대면	66명	4	4기 운영

보건업무담당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연수를 확대하는 등 학교 보건 관련 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최근 3년 보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사업 내용 및 실적	예산	
		교육부 특교	교육청 자체 예산
2020년	-보건업무담당교사(저경력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1회) -학교보건컨설팅장학(14교)	-	1
	-보건교과연구회(2팀)	-	6
2021년	-학교보건컨설팅장학(28교) -보건업무담당교사연수(1회) -보건교사역량강화연수(3회)	-	12
	-보건교과연구회(2팀)	-	6
	-건강증진프로그램(약물 오·남용 예방) 운영(7교) -학교보건컨설팅장학(54교,98회) -학교보건업무담당자역량강화연수(9기) -보건교육역량강화연수(7회) -보건(담당)교사 회복탄력성 강화 연수(2회)	21	37
2022년	-보건교과연구회(1팀)	-	3
	합계	21	65

- 이에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건업무담당 직원 부족과 업무 과다, 보건교육 관련 내용의 분산과 중복 및 연계성 부족,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됨.

##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그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에 사용된 ‘학생’ 과 ‘보건교육’에 대한 용어의 뜻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조례의 적용범위 및 대상을 분명히 하였음.

다만 학생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는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4에 교육감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보건교육이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의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내에 보건팀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 규정은 「학교보건법」 제15조와 같은 법<sup>27)</sup> 시행령 제23조<sup>28)</sup>에 근거한

27) 학교보건법: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생략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28)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 12. 9.>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

규정이나 교육감의 실질적인 보건교사 정원 확보와 배치에는 한계와 제약이 있는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 8조에 보건교육센터 설치와 안 제9조에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한 것은 교육감의 조직구성과 운영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보건교육 거점학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보건교육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생략
2. 생략
3. 보건교사의 직무
  -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다. 종합의견

-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이 행복한 삶의 중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교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 역량 함양은 중요하다 할 것임.
  
- 이 같은 측면에서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문 체계와 주요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교육감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보건교육을 위해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사업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30., 2016. 12. 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12. 20.>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2. 1. 26.>

②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26.>

③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07. 12. 14.]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2. 1. 26.]

##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 12. 9.>

②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 12. 9.>

③ 법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9.>

④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 1. 학교의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2. 학교약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검사

마.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 [제목개정 2021. 12. 9.]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 삭제 <2012. 8. 13.>

②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8. 13.>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2.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
3.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 2. 3.>

[제목개정 2012. 8. 13.]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건교육센터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등은 향후 운영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